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2.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시공사별 대출한도 관리 강화

‘14.11월 ○○○○○○이 시공사인 ◇◇◇◇◇◇◇◇ PF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시공사에 대한 투자한도가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상기 PF대출을 추가로 취급함으로써 내규(「운용자산 투자한도 관리지침」)에 따른 시공사 한도를 초과하였고,

이후, ‘14.12월 시공사별 투자한도를 운용자산의 2%에서 3%로 확대하여 투자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음

이처럼 한도증액을 통해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는 경우, 여신편중 리스크가 부적정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리스크 감내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한 경우 한도 해소시까지 신규대출 중지, 한도초과 유예기간 설정 등 실질적으로 한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계정 투자한도는 일반계정과 다르게 시공사 투자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투자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부동산 PF대출 현장실사 근거 마련 필요

부동산 PF대출 취급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와 관련하여 실사실시, 실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투자심사보고서 반영 등에 대하여

관련 내규인 「부동산 PF 위험관리 규정」에 현장실사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분류 세부기준 마련 필요

검사종료일(2016.10.28)까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여 동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